

제3장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

The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Local
Practice of Women's Human Rights

허민숙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당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은, 무엇이 여성
인권이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인권담론의 확산 과정에 대한 페미니스트 개입과 비판, 바로 그 지점에서의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주제하고, 여성인권 담론 실천의 문제를 조명한다.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역사, 그로부터 구축된 여성인권 담론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여성인권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은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침투되어 그 사회의 공유된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여성인권의 토착화 논의로 수렴되고 있다. 이 지형에서,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a feminist intervention in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with the question of how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s and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have been developed and flourish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important for women in their situated locations to specify the ways in which women's human rights can be guaranteed and protected,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Becaus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cussions surrounding the practice of women's human rights, the notion of vernacular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has been at the center of feminist inquiry. In this vein, this paper sheds lights on a significant contextual factor that made it possible for locally situated women to appropriate and apply a universal women's human

rights framework.

KEY WORDS 국제사회 global society, 여성인권 women's human rights, 여성인권 운동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여성인권담론 women's human rights discourse, 여성인권의 실천 practice of women's human rights, 인권의 토착화 vernacularization of human rights

I 국제사회와 여성인권

이 글은 국제 인권체제 구축 및 확립의 과정을 그 배경으로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여성인권담론의 실제 적용을 둘러싼 논의 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그 어느 곳 (every corner of the world)에서라도 인권이 그 규범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인권담론의 확산 과정에 대한 폐미니스트의 개입과 비판, 바로 그 지점에서의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여성인권담론 실천의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중심 이슈로 등장하게 된 인권은 냉전으로 인한 정체기¹를 거쳐, 탈식민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그 발전의 경로를 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1950년대 유엔 인권활동을 계기로 비로소 본격화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자성은 국제인권회의에 기반을 둔 국제 인권 논의의 진전, 그리고 국제 인권체제 확립이라는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이 글에서 살펴볼 국제 여성인권운동, 그리고 여성인권담론(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의 등장과 발전 역시 이러한 인권운동 및 인권담론의 역사적 발전과 확산의 궤적을 공유한다.

1 책 도널리(2002)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인권 논의에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집중적으로 옹호한 반면, 소련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무시하는 미국의 입장에 반발하였다. 나아가 미국과 소련 모두 자신의 세력권을 경쟁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권을 경시한 것은 물론, 인권 탄압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미소 양국의 아님적 대립과 갈등, 세력 다툼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와 합의는 종전 후 10년 이상 정체기에 머물게 된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여성운동의 등장과 세력화, 지구적 연대와 초국적 논의의 물결은 여성인권담론 자체에 지구적 합의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야말로 여성문제에 관한 보편원칙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해왔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 폭력 등 여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성인권을 기준으로 권리 침해의 여부가 판단되고,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삶의 개선 등의 과제 역시 여성인권이 그 구심점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3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포함, 각 여성정책에 있어 여성인권은 가장 대표적이고 당위적인 준거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인권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쩌면 근래에 이르러 가장 많이 쓰이고 널리 알려진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연 무엇이며, 더불어 어떤 것이 여성인권 침해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여성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지만, 정작 그 법과 정책이 추구하는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여성인권 담론의 편재와 그 실천에 대한 현실적 괴리를 진단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담론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등장과 발전, 여성인권담론의 원칙과 기준, 여성인권 실천 과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 삶

의 긴밀하고도 역동적인 교차점을 확인하고, 그 점점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II 국제 인권체계의 확립과 페미니즘

1. 보편인권 개념과 페미니스트 비판

“자국 영토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대우방식”(잭 도널리 2002, 26)으로 이해되어왔던 인권이 국제정치 영역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한 인류 전체의 충격과 자성을 그 도화선으로 유엔 인권활동이 시작되고, 그 결과 탈식민지화가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의 증가를 국제 인권체계 확립 과정이라 보고 있다(잭 도널리 2002, 27-33). 이런 의미에서 국제 인권체계는 유엔 창설의 계기, 과정, 그리고 그 결과라 일컬을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국제사회가 인권에 관한 국가 간 규약을 만드는 과정들에 개입해왔다. 유엔 창설 아래, 양성의 동등한 권리 를 위해 투쟁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유엔의 각 국제적 규약과 조약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력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들 투쟁의 결과는 유엔헌장(1945), 세계인권선언(1948), 유럽 인권 협정(1950), 유럽의 인권 및 근원적 자유에 관한 협정(195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미주인권협약(196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1981), 아프리카 인권 및 국민의 권리위원회

(1987) 등의 결실로 나타났다(Deveaux 2006, 59). 이런 이유로, 한동안 여성의 권리나 여성인권이 1948년의 인권선언에 의해 이미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여성과 남성 간의 공식적·법적 평등을 포함한 보편인권선언은 그야말로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인간 평등에 관한 규약이라는 것이다. 보편인권 개념에 근거한 국제 인권체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의 실현 가능성을 앞당기는 데 있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기대와 낙관은 이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들을 포함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유엔 인권선언에 단지 여성이 포함되거나, 여성의 권리가 몇몇 조약을 통해 명문화되었다는 사실들이 여성인권 실현과 자동적으로 동일시되는 시선을 경계하였다(존 베일리스 외 2009, 317). 무엇보다 권리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가진 물성성을 문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여성권리를 인지한 국제법의 중요한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말하는 여성권리라는 것은 비차별 평등주의(equal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에 입각한 공식적인 정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근거한다는 점, 즉 성별에 의한 차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성 경험을 기준으로 한 성 중립적 원칙을 여성에게도 적용한다는 기존의 여러 조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었다(Coomaraswamy 1994; Merry 2003a). 이런 점에서, 여성인권 개념을 둘러싼 페미니스트 논의의 핵심은 성 중립적 원칙을 준수하라는 요구라기보다는 성 중립

적 원칙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 중립적 원칙이라 는 미명하에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던 여성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인권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이다. 수사(rhetoric)로서의 인권담론과 현실로서의 여성 삶의 간극에 관한 논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공헌과 한계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진다.

2.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권리담론

자유주의 사상과 가치의 보편성은 인류 전반을 그 수혜자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실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지기반을 구축해왔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이론 및 철학 역시 자연권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해방적 전망을 주시해왔다(Jaggar 1983, 28).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사상으로부터 여성이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로 판단되기에 앞서 이성적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춘 보편인간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은 자유, 평등, 선택, 개인, 권리 등의 개념을 통해 여성 역시 사회와 공공 영역에서의 주류 세력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합리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보유한다는 페미니스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준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의 개인권리 개념이 가지는 강력한 정치적 정의(polynomial justice)의 개념 틀 속에서 여성 종속 및 젠더 억압의 오류가 극명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Groenhout 2002, 57).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자유주의 정치학은 이처럼 각각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각자의 선택권 및 결정권과 같은 제반 권리를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서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젠더화된 사회 현실(gendered social reality)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과연 성 중립성을 표방하는 자유주의 실천과 원칙들을 유의미한 정치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답해야 한다. 자유주의 사상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인간 주체가 남성을 의미하는 한, 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상호 양립성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chaeffer 2001, 701). 성 중립적인 자유와 평등 원칙이 사실은 남성 지배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페미니스트 비판은 자유주의 사상이 공/사 영역의 분리를 자연스러운 사회질서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즉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개인 주체의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자는 자유주의 사상은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사적 공간을 지정하는데, 이 때문에 이곳에서의 여성 억압과 차별은 자유주의적 원칙,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의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Frazer 1998; Htun 2005; Rudy 1999). 그 한 예로, 한국 가정폭력추방운동을 포함해 여성운동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정책의제로 부각시켰을 때, 여성의 매 맞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사생활 보호의 권리 주체로 남성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여성이 사적 공간에서 안전할 권리보다는 그것이 폭력 행위라 할지라도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 유지가 더 우선적인 권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허민숙 2012, 49에서 재인용). 이는 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 주체와 개인 권리 개념이 결국은 성별 분리와 위계에 기반한 공/사 영역의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자유주의 권리담론은 여성에게 무한히 펼쳐진 자유와 권리의 유용성을 현실 개선을 위해 극대화하라는 약속과 격려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이 위치되고 전개되는 조건으로서의 사회조직 및 운영의 방식 역시 젠더, 인종, 계급 등의 사회적 차이를 초월 하여 중립적이고 자율적일 것이라 전제함으로써 여성문제 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간과해버린다는 한계가 있다.

III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교류와 국제 여성인권운동

자유주의 권리담론의 성 중립적 원칙으로는 여성의 경험과 삶의 조건들을 제대로 반영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여성인권을 가장 핵심적 가치로 여기는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기조와 방향을 수립해나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에서는 1975년을 기점으로 설명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교류와 협력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1990년대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과 발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교류와 협력²

국제사회에서 여성들 간 교류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사회 조직에 여성이 참여하고, 네트워킹과 상호 교류를 통해 여성들 간 만남의 기회를 엿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YWCA, 세계농촌여성연합회(Associated Country Women of the World)와 같은 여성 조직을 통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간 협력의 기회가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율적이면서도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은 의미에서의 여성 교류와 협력의 장은 197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1974년 설립된 여성 국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The Women's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는 전 세계 여성들 간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 억압에 대항하는 여성들에게 정보와 행동 요령을 제공하며, 여성 그룹과 여성조직 간 지지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어 ISIS 국제 여성저널(International Women's Journal), 행동하는 여성(Women in Action), 여성의 세계(Women's World)와 같은 출판물을 통해 전 지구적 여성 간 소통과 이해,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며, 이후 1976년 국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Feminist Network)의 설립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 있어 여성운동의 성장은 1975년을 기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유엔 국제 여성의 해(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Women's Year), 그리고 여성을 위한 10년

2 이 부분은 Miles(1996)의 논의 중 8장 “Global Practice”(pp.109-1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Decade for Women[1975~1985])은 국제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멕시코, 1980년 코펜하겐,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 번의 국제회의를 통해 전 세계 여성들 간 직접적 만남과 대화, 미래를 위한 협력을 현실적으로 구상되고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 번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여성운동이 어떻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세 번의 국제회의가 단지 공식 석상에서 각 나라의 여성 대표들 간의 교류만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즉 유엔 국제회의는 여성 대표들 간의 교류뿐 아니라, 그 회의에 수반된 비공식적 여성 포럼과 여성그룹 모임 등을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여성 간 참여와 교류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75년 멕시코 회의의 비공식 포럼에 참여한 여성의 수는 6천 명에 이르고, 1980년 코펜하겐에서는 7천 명, 그리고 나이로비 회의인 1985년에는 1만 4천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거대한 만남의 장을 이루었다. 이들이 스스로 여성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며, 전폭적 지지와 협력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경험한 것은 그 자체로 국제 여성운동의 성장이자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유엔 국제회의 외에도 1979년 방콕, 1980년 뉴욕에서의 국제 폐미니스트 워크숍은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간 교류와 협력을 일구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들 워크숍을 통해 여성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데올로기를 존중하면서도, 폐미니즘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중요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새 시대를 위한 여성

발전 대안(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을 조직해내는 결실에 이르게 된다. 이 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비서구 제3세계 여성들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여성 연대의 산물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비서구 제3세계 여성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여성 발전과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다른 한편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 여성운동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여세 속에서 개최된 1985년 나이로비에서의 국제회의는 명실공히 지구적 차원에서의 여성연대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비서구 제3세계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며, 해결에 나선다는 여성운동의 근본적 기조가 실현되는 생생한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타당하다.

2.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인권운동의 성장은 여성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더 확장해보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열망 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좀 더 복합적인 이유와 배경들에 의한 것이었다. 먼저, 지구적 차이와 경계를 넘어서는 여성운동의 등장이 절실히진 이유 중 하나는 여성운동 내부의 오래된 난제인 “여성들 간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 억압에 대한 저항운동을 바탕

으로 성장한 여성운동은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성공적으로 이어갔지만, 이내 서구·백인·중산층·이성애 여성 중심의 운동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 사회에서 여성들 간 교류가 확장될수록 여성들 내부의 차이는 더 명확해졌고, 제국주의적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은 거세진 것이다. 그에 따라 '여성 내부의 차이 문제'는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 되었고, 여성주의는 여성 간의 차이를 관통하며 연대를 이루 어내는 정치학을 구상하게 된다(허민숙 2008).

국제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의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연대를 복구해내기 위해 여성들 간의 차이를 무마하고 가리려는 시도 대신, 여성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전지구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여성들 간의 모든 차이를 넘어, 그 극명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여성 보편의 경험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의되고, 그로 인해 여성 간 결집을 이루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허민숙 2008).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있게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이 일부 형성되어 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폭력이 곧 인권문제라는 국제적 합의와 명분을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리의 지적처럼, 홀로코스트 생존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 반인륜적 전범자 처벌 등을 계기로 인권담론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인지된 역사적 배경(잭 도널리 2002, 27-28)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인권 문제로 명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타진해

보려는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더불어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시대적 변화는 여성들 간 교류와 소통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을, 때마침 확산되고 고조된 국제 인권 개념 발전과정에의 편승이자 지구화에 의한 우연적 수혜의 결과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제 여성 인권운동이 발전시킨 여성인권 개념은 기준 질서에 대한 순응이나 혜택의 손쉬운 결과, 즉 기존의 인권 개념에 여성을 덧붙인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여성 인권 침해로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제화를 통해, 기존의 보편 규범 및 보편원칙에 대한 비판과 도전, 성 중립적 인권 개념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여성 경험에 대한 성찰과 공유라는 적극적이고도 혁신적인 여성운동을 전개시켰다.

3.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국가공모³

여성인권 개념은 마치 기존의 인권 개념에 여성의 단순히 추가한 것이거나, 인간의 개념에 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 개념은 보편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위한 여성권리 개념으로부터의 전략적 전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인권론의 구축은 보편인권 개념이 가진 성 중립적 가치에 내재되어 있는 몰성성에 대한 비판의 과정이었고, “인류 절반의 권리”로

3 이 부분은 허민숙(2012) “여성주의 인권 정치학” 3장의 논의를 참조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서의 여성권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일깨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Friedman 1995, 22).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일이 기존의 보편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기존의 인권 침해 개념이 가진 남성 중심적인 공/사 영역의 분리라는 전제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인권담론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제화를 통해 그 구체성을 확보해왔다. 이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영역에서, 개인인권 침해의 주된 당사자는 주로 독재적 군부 정권으로 간주되었기에, 실종, 고문, 즉결재판 등이 인권 침해의 주요 감시 영역이었다(잭 도널리 2002, 38).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가권력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개별 행위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의 위법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인권문제로 정의되지도 않았고 또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간섭 및 개입의 명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주의자들은 이처럼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해되지 않는 데에는 바로 성별에 따른 공/사 영역 분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사 영역의 분리는 남성을 공적 영역에, 그리고 여성을 사적 영역에 배치하며, 사적 영역의 대표적 공간으로 가정을 전제하고 이곳을 치열한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유일한 도피처 이자 안식처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폭력과 횡포로부터 개인 주체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 사적 영역을 인지함으로써, 이곳 역시 성별 권력 관계로 인한 위계적 질서와 통제가 난무하는 곳임을 간과한다. 실

제로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참혹한 범죄들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해야 할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국가 불가침의 영역이자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로서의 가정에 대한 신화(myth)의 지속은, 이러한 폭력과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남성의 입장과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주의자들은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개입이 종종 사생활 보호 내지는 사적 권리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 역시, 누구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재탐구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Charlesworth 1994; Frazer 1998; O'Hare 1999; Parisi 2002). 즉 사적인 공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의 사생활인지, 혹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 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명예를 훼손당할 우려가 있는 자의 사생활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한 국제 여성인권 운동은 중립성,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한 보편인권 개념이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개념임을 비판하며,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인권담론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첫째, 문화와 민족, 인종과 계급의 경계와 차이를 넘어 모든 여성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범여성문제라는 점(Charlesworth 1994), 둘째, 폭력은 과거와 달리 양성평등에 힘입어 여러 사회 영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성취와 성과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있어 치명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 거론되게 된다. 그러나 범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란 점에서 과연 인권 침해의 구성 요소를 충

족시키는가의 문제, 즉 개인 행위자에 의한 폭력 범죄에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가 관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이를 위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 특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여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는 바로 그 현실에서 여성인권 침해의 논리를 전개시킨다. 즉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특히 여성이 그 피해자일 때 그 범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것,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의 고착화 등이 여성의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이며, 이는 이를 방임하거나 묵인하는 국가공모(state complicity)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여성의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국가의 방임은 그 범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범죄를 자속시키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한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의무 내지는 책무를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26조에서 국가는 어떤 잔혹한 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보호 임무를 수행할 때 보호 대상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ICCPR article 26). 바로 이를 근거로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중한 법적 개입 및 조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명백한 증거라 규정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로 명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활동에 힘입어, 1992년 여성에 대한 폭력 부문에 관한 CEDAW의 일반 권고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차별의 한 형태(a form of discrimination)라 못 박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인권 침해,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 자유 간의 밀접한 관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CEDAW 1992). 이러한 변화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임을 명시한 비엔나 선언을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국제 인권 개념의 발전과 진보적 움직임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비엔나 선언은 특히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배제 원칙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이 야말로 인권 보호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국제적 규준임을 분명히 하였다(이봉철 2001). 문화적 차이를 근거로 여성의 권리가 부정하거나 박탈해온 수많은 관습과 관행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엔나 선언은 여성인권담론의 진일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주요 인권그룹들과의 연대에서부터 지역, 지구, 경계, 문화를 넘나드는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일구어내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 제출된 123개국 800여 개 여성단체들이 보내온 23개국의 언어로 써진 30만 개의 서명은 여성인권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열망의 기록이자 증거이다. 국제여성트리뷴센터(IWTC), 세계여성리더십센터(CWGL), 국제YWCA에 의해 공식 집계된 이 숫자 외에 유엔에 직접 보내진 수많은 청원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비엔나 선언’이라 단언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Friedman 1995).

IV 여성인권담론 논의의 지형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로 기억되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제법이 관여해야 할 인권 침해의 문제로 정의함으로써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책무를 선포하고 선언함은 물론 구체적 행동강령을 통해 여성인권 실현의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였다. 비록 실행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국제 여성인권운동을 통한 국제 규범의 구축은 여성운동가들로 하여금 자국 정부들이 여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강윤희 2008; Bunch 2001; Merry 2003a). 현재의 정치질서, 특히 국제정치체계에서 인권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에 견줄 만한 그 어떠한 이념과 규준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에서 여성인권담론에 근거를 둔 여성인권운동은 보편규범으로서의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만큼이나 갈등과 모순의 교차적 층면 역시 동시적으로 존재한다(Baynes 2000). 그중 여성권리담론, 그리고 여성인권담론을 둘러싼 페미니스트 내부의 고민과 문화논쟁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성권리담론의 패러독스

앞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사회시스템에 도전하기보다는 이에 의존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 정치학은 이미 권력관계의

승자인 주류에게만 실천방안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회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상징성과 총체성을 활용하려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자유주의 정치학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이론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추상적인 자유주의 개인권리담론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여성 삶의 경험을 투영해 내는 권리담론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여성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여성 정체성에 근거한 권리주장(identity-based rights claim)은 여성들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보다는 바로 그 억압과 종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브라운은 ‘기존의 권리담론이 남성 중심적인 개념이고 여성의 복합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페미니스트 비판은 권리담론이 실제 여성운동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지엽적인 고민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실제 여성운동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정이자 핵심적 전략으로 삼아왔고, 이는 여성의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억압받거나 차별 받은 여성의 경험은 피해(injury)로 명명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운동은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의 피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는 필수 과정이자 여성운동의 주체 세력을 결집시키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어왔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을 의제화한 국제 여성인권운동에서도 활용된 전략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이처럼 고도로 세분화된 여성들의 특수한 피해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에 여성권리담론이 부여되는 운동방식은, 여성운동이 그토록 해체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젠더규범을 오히려 강화하고 그 정체성에 여성 주체를 가두어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에 의하면, 본질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은 결핍과 손상의 상태를 제대로 묘사해내는 중요한 정치적 전략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여성의 피해 경험을 더욱 세세하게 분절화하여 여성의 권리로 명명하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결국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으로서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특수한 정체성에 여성을 그대로 고정시켜버리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Brown 2000). 브라운의 우려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주체 구성과 그로 인한 여성운동의 딜레마, 즉 여성의 피해 사실에 대한 강조와 폭력의 잔인함, 참혹한 묘사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여성의 피해자화가 결국에는 유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성별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재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모순에 직면해야 했던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결코 기우라 할 수만은 없다(Schneider 2000). 여성 피해자의 절망적 상황과 상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 자격을 통해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가 가늠되는 수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여성폭력의 핵심 원인이 성별 권력관계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피해 경험은 여성권리 주장의 존재론적 근거가 될 때 법 담론을 통해 일부의 경험이 전체 여성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브라운의 주장은, 여성의 경험을 나열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기존 인식체계나 정치권력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일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권력 해체를 위한 전략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에 있어 여성권리담론은 “정치적으로 필수적이면서 퇴보적이고 그 때문에 패러독스(paradox)”라 주장한다(Brown 2000, 239). 브라운의 문제 제기는 추상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권리 개념의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선언하거나, 여성 중 일부 계층을 위한 권리담론의 편파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경험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여성권리를 둘러싼 논의의 지형에서 여성인권담론은 과연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다양한 폭력에 대한 여성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점에서는 브라운이 지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초래할 수 있는 모순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국제 여성인권운동은 “피해자” 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 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잭 도널리 2002, 49)로서 여성권리의 외연을 전환시켰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피해와 구제의 담론에서 정의와 책임의 담론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피해 사실보다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는 삶의 조건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권리담

론의 패러독스를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여성 범주와 보편여성인권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실제 삶과 경험의 실질적 공간인 문화에 대한 고민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여성의 피해사실에 동조적일 수 있는 문화적 배경에 의존치 않은 채, 여성인권 개념이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창출해내야 하는 모순적 과제를 다루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2. 여성인권담론과 문화 논쟁

모든 사람이 생득적으로 가지는 권리인 인권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편인권 개념이 공/사 영역 분리를 전제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성장한 여성인권담론은 곧 ‘여성은 여성인가?’의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허민숙 2012, 51). 여성인권담론이 상정하는 보편 여성의 과연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개념인지를 질문함으로써 서구·백인·중산층·이성애 중심의 페미니즘이 국제 여성인권운동에 있어서도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페미니즘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는 새로운 영역은 아니다. 여성인권담론은 그간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주의를 방패로 하여 여성 억압과 차별을 일삼던 가부장적 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여성권리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경계를 우선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서구 사회에서의 여성 차별적 문화와 전통을 문화적 차이라는 명

목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은 여성 내부의 반발과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비서구 문화를 야만과 미개로 등치시키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시선이 여성인권담론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여성인권담론의 지역적 유용성과 활용에 대한 고민이다. 비서구 여성들을 해당 문화의 희생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피해자화하는 시선에 담긴 서구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Anthias 2002; Volpp 2001)은 오래된 논의이다. 이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이름으로 여성 의제를 발굴해온 자들은 과연 여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서구의 야만적이고 미개한 문화에 대한 비판이 문화적 제국주의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 정체성의 토양이자 삶의 가치 배양의 준거점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낙관(Herr 2004)에 대한 논의도 전개된 바 있다. 하지만 문화적 권력과 규범에 의해 너무도 쉽게 훼손되는 여성권리에 대한 목도는 거부할 수 없는 여성들의 현실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Cornwall 외 2006).

이에 따라, 문화를 둘러싼 논의의 방향도 기존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을 재강화하는 식의, 즉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방식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문화논쟁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접근은 보편과 서구를 등치시키는 기존의 전제를 혼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나라얀(Uma Narayan)은 서구 제국주의의 폭력과 억압, 약탈, 비인간적이고 탈인권적 역사를 상기시키며, 과연 보편인권 개념이 본래적인 서구의 가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묻

는다. 나아가 서구의 압제에 맞선 비서구 사회의 수난과 저항이 자유, 평등,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역사를 되짚으며 보편 개념을 서구 태생적으로만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고 있다 (Narayan 2000; 허민숙 2012, 56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고정되고 정지된 것으로 인식해온 보편 개념이 재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인권담론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 개념이 지역적으로 수용·전이되고, 전환하는 과정, 즉 여성인권담론이 수용되고 실현되는 더욱 특수한 맥락에 대한 관심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비서구 사회에서의 보편 여성인권담론의 활용과 그 유용성에 관심을 둔 이러한 논의는 비서구 여성주의자, 혹은 여성운동가들이 보편 여성인권담론에 대해 회의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결코 서구 중심적 인권담론의 수용 여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제사회가 아닌 지역적 수준에서 여성인권담론의 효용성 문제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시화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활용하는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V 여성인권의 실천

1. 문화적 울림의 딜레마

국제사회에서 보편 여성인권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옹호되고,

권위 있는 조약 등을 통해 인정받는 것으로 여성인권은 보장되는 것일까? 보편 여성인권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관심은 여성 인권이 실제 수용되고, 거부되며, 실행되고, 결실을 거두는 국내적 여건으로 모아졌다. 정치적 담론이자 수사로서 추상적, 형식적, 개인 권리 선언인 인권담론이 과연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어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여성인권담론의 국내적·지역적 활용에 관한 질문은 사회운동론의 비교적 최신 이론으로 일컬어지는 프레임 이론(frame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성공과 확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의미구성’에 집중하는 프레임론은 사회운동이 결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진공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설득, 동원, 참여시키는 데 있어 담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한 사회 내에서 설득력 있는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짙게 배어 있는 문화 및 정서와 접합하며 교류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운동을 통한 의미구성의 보수화 내지는 현상 유지적 경향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Benford 외 2000; Noonan 1995). 여성인권운동의 지역적 실현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 지구적 보편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여성인권담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문화적 소통에 근거하지 못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인권담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존하는 문화적 질서와 인식체계를 반영하여 여성인권운동을 실행할 때,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인권담론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으로 일

걸어지고 있다(Levitt 외 2009).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여성인권보호, 여성의 인간화에 대한 요구가 실제 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의 과정에서 ‘가정의 보호와 유지’라는 프레임으로 변경되었던 한국사회의 경험, 그리고 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의 정책적 목표가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왔던 우리사회의 현실은 이처럼 문화적 울림(resonance)이 결여된 여성인권담론의 수사적 활용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Heo 2010).

이러한 고민은 앞서 웬디 브라운의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브라운은 여성의 피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는데, 한편 이처럼 여성의 피해자화가 정치적 전략으로 구상되고 또 실제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문화적 배경에 약자와 피해자로서의 여성성이 전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떠올리면, 우리가 앞서 논의한 여성권리담론의 패러독스를 여성인권담론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진다. 왜냐하면 권리의 담지자, 권리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수용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이기에 앞서 인간임을 강조하며 인간의 권리로서의 여성권리를 주장할 때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문화적 소통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여전히 일구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 여성인권의 토착화

이제 여성인권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문제에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인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인권에 근거한 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인권을 그 지역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 등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 설명되고 있다(Goodale 2007, 24). 그에 따라 이론과 실천, 법과 정치, 이론적 추상성과 실제적 규범 등 주로 이 분법의 틀 내에서 사고되어왔던 인권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문제시하는 것 자체를 보편인권의 거부와 동일시했던, 어쩌면 경직된 시각을 넘어 인권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권담론이 각 사회의 맥락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념화, 묘사, 표현되고 실천, 실행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Goodale 2006, 26; Goodale 2007, 25). 이러한 변화는 인권이 논의되는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권담론, 특히 여성인권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침투되어 결국 그 사회의 공유된 개념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되었다. 이를 인권의 토착화(vernacularization) 논의라 한다(Levitt 외 2009).

여성권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당성 확보와 국내/지역 수준에서의 여성권리의 현실 간 괴리가 클수록, 인권의 토착화는

여성인권담론의 실천과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논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인권담론의 국제적 영향력과 상징성에 비해 실제로 여성의 삶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력에 대한 관찰과 우려는, 주로 정치적 권리와 함께하는 여성인권담론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의 여성권리를 포괄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구, 백인, 중산층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한 여성인권담론에 대한 경계와 맥을 같이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여성인권의 지역적 과급효과가 단지 위에서 아래, 지구에서 지역의 방식으로 어떤 가치와 개념이 전달되는 수준에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착화의 주체는 여전히 경계를 넘나들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엘리트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현실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한 사회의 사회운동가들, 나아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시민,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의한 권리 침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들 모두 인권담론 확산과 실천의 주요한 주체들로 인지되고 있다(Goodale 2007; Levitt 외 2009). 이런 점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개방성과 역동성, 현장성과 맥락의 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여성인권의 실천은 특히 권리의 담지자인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인지하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이 겪는 피해 경험이 사회 불평등 구조에 의한 의도적인 배제, 시스템에 의한 지배와 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의 엘리트들, 그리고 지배계 층에 의해 여성인권의 내용 및 그 실천이 일방적으로 판단되고 좌

우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인권 실천을 위한 원칙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워야 할 여러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여성 인권의 토착화 과정, 한 사회 내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도덕적 가치와 여성인권을 소통시키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이 불평등한 사회관계로 판단되지 못하고 여성 개인의 문제로 귀착되어버리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현존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통용될 수 있어야 하는 여성인권의 토착화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여성의 역할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간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사회질서이자 규범으로 여겨져왔던 남녀의 젠더 수행(성역 할)에 관한 새로운 해석은 여성인권 실천과 토착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간 법 담론 속에서만 존재해왔던 여성의 권리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당한 방법도 바로 여성인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수긍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그러나 바로 이때, 과연 어디서부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 있다. 사회 전반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사람들의 가치를 빠르게 혼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법적 판단이다. 메리(Sally E. Merry)는 “개인이 권리의 인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을 때 겪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권리의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가 관건이라 주장하고 있다(Merry 2003b, 347). 이는 단지 몇몇 법조인의 의식 개선 및 여성인권에 대한 친화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여성인권을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여성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대중들의 압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 보편원칙이 가지는 권위와 합법성의 실행, 사회운동을 통한 여성인권 담론의 확산, 법 실행이 의존해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 확충, 대중의 인식과 가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법 담론의 전환, 사회정의에 근거한 사회구조의 개선 등의 관계를 조율하고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일이 여성인권 실천, 여성인권의 토착화의 과제이자 전략으로 남아 있다.

VI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인권운동의 성장과 확산은 여성주의 역사에서 분명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교류하려는 여성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자, 담보 상태에 머물던 여성 내부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모든 차이를 넘어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공통의 문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목하고 그를 국제적 수준으로 의제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 차이와 경계를 초월하고 가로지르는 연대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보편인권 담론의 성 중립성에 내재되어 있던 물성적 관점과 성 편견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해온 것, 인권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실천은 반드시 그 맥락적인 여전과 상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 그를

통해 보편인권 개념의 발전, 전달, 변형의 가능성 역시 폭넓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기여해온 점 역시 여성인권담론의 궤적이자 공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권담론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발전과는 달리, 인권의 실천과 실현에 있어서는 풀고 해결해야 할 여러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들이 남아 있다. 물론, 인권에 대한 더욱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제기됨에 따라, “모순적이고 불완전하며, 불확실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 인권 실천의 경험을 보편원칙의 실패로 인식하지 말고, 이를 지역 내 인권 발전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한다”는 합리적인 격려도 존재 한다(Goodale 2007, 26). 그러나 한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인지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상적인 인권 실천과 실현의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그들의 권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그중에서도 사법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논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Merry 2003b). 권리에 대한 실제적 경험 없이 권리의 주체이자 담지자로 행동하는 개인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논의는, 권리에 대한 무수한 문헌과 토론, 그리고 국내·외 활동가들에 의한 구호 내지는 선언이 실제 개인 삶의 경험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너무도 필수적인 원리를 확인해주고 있다. 여성인권의 맥락적, 관계적, 그리고 상호 의존적 실천과 토착화를 통해 여성인권의 의미가 재구성되고 재정립되며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될수록, 무엇이 여성인권이며 어떻게,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 실천을 담보해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윤희. 2008. “글로벌 여성인권 거버넌스와 러시아: 행위자의 다변화와 상호작용.” *『한국정치 학회보』* 42집 4호, 501-522.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잭 도널리(Donnelly, Jack) 저·박정원 역. 2002.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서울: 오름출판사.
- 존 베일리스(Baylis, John) 외 저·하영선 외 역. 2009.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 허민숙. 2008. “전 지구적 여성주의와 초국가적 여성주의들”. *『여성학논집』*.
- ______. 2012. “여성주의 인권정치학: 보편 vs. 상대주의의 전환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집 1호, 45-62.
- Anthias, Floya. 2002. “Beyond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Location Difference and the Politics of Location.” *Women's Studies Forum* Vol. 25, No. 3, 275-286.
- Baynes, Kenneth. 2000. “Rights as Critique and the Critique of Rights: Karl Marx, Wendy Brown, and the Social Fiction of Rights.” *Political Theory* Vol. 28, No. 4, 451-468.
- Benford, Robert D. and David A.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s of Sociology* Vol. 26, 611-639.
- Brown, Wendy. 2000. “Suffering Rights as Paradoxes.” *Constellations* Vol. 7, No. 2, 230-241.
- Bunch, Charlotte. 2001. “Women's Human Rights: The Challenges of Global Feminism and Diversity.” Marianne DeKoven, ed. *Feminist Locations: Global and Local, Theory and Practice*, 129-146.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Charlesworth, Hilary. 1994. “What are ‘Wome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becca J. Cook, ed. *Human Rights of Wom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58-84. Philadelphia: Philadelphia University Press.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92. General Recommendation No. 19(11th session).
- Coomaraswamy, Radhika. 1994. *Preliminary Report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4/45 UN Doc E/CN.4/1995/42* (22 November 1994).
- Cornwall, Andrea and Maxine Molyneux. 2006. “The Politics of Rights: Dilemmas

- for Feminist Praxis: an introduction." *Third World Quarterly* Vol. 27, No. 7, 1175-1191.
- Deveaux, Monique. 2006.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Gender and Justice in Multicultural Liberal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Arvonne S. 1999. "Becoming Huma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Women's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1, No. 4, 853-906.
- Frazer, Elizabeth. 1998. "Feminist Political Theory." Stevi Jackson and Jackie Jones (eds.).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50-6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riedman, Elisabeth. 1995. "Women's Human Rights: The Emergence of a Movement." Julie Peters and Andrea Wolper. eds. *Women's Rights, Human Rights: International Feminist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 Goodale, Mark. 2006. "Ethical Theory as Social Practice."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08, No. 1, 25-37.
- _____. 2007. "Locating Rights, Envisioning Law Between the Global and the Local."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Tracking Law Between the Global and the Local*. Goodale. M. and S. E. Merry. (eds.). 1-38.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enhoult, Ruth E. 2002. "Essentialist Challenges to Liberal Femin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28, No. 1, 51-75.
- Heo, MinSook. 2010. "Women's Movement and the Politics of Framing: The Construction of Anti-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in South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33, No. 3, 225-233.
- Herr, Ranjoo Seodu. 2004. "A Third World Feminist Defense of Multicultural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30, No. 1, 73-103.
- Htun, Mala. 2005. "What It Means to Study Gender and the State." *Politics & Gender* Vol. 1, No. 1, 157-166.
- Jagger, Alison. 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Rowman and Allanheld: The Harvester Press.
- Levitt, Peggy and Sally Merry. 2009. "Vernacularization on the Ground: Local Uses of Global Women's Rights in Peru,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Global Networks* Vol. 9, No. 4, 441-461.
- Merry, Sally Engle. 2003a. "Constructing a Global Law-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Human Rights System." *Law & Social Inquiry* Vol. 28, No. 4, 941-977.
- _____. 2003b. "Rights Talk and the Experience of Law: Implementing Women's Human Rights to Protection from Violence." *Human Rights Quarterly* Vol. 25, 343-381.
- Miles, Angela. 1996. *Integrative Feminisms: Building Global Visions 1960s-1990s*.

- New York: Routledge.
- Narayan, Uma. 2000. "Essence of Culture and a Sense of History: A Feminist Critique of Cultural Essentialism." Uma Narayan and Sandra Harding, eds. *Decentering the Center: Philosophy for a Multicultural, Postcolonial, and Feminist World*, 80-100.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Noonan, Rita K. 1995. "Women Against the Stat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ollective Action Frames in Chile's Transition to Democracy" *Sociological Forum* Vol. 10, No. 1, 81-111.
- O'Hare, Ursula. 1999. "Realizing Human Rights for Women." *Human Rights Quarterly* Vol. 21, No. 2, 364-402.
- Parisi, Laura. 2002. "Feminist Praxis and Women's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 Rudy, Kathy. 1999. "Liberal Theory and Feminist Politics." *Women & Politics* Vol. 20, No. 2, 33-57.
- Schaeffer, Denise. 2001. "Feminism and Liberalism Reconsidered: The Case of Catharine MacKinn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699-708.
- Schneider, Elizabeth M. 2000. *Battered Women and Feminist Lawmak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26. Vol. 1, No. 4, 571-585.
- Volpp, Leti. 2001. "Feminism versus Multiculturalism." *Columbia Law Review* Vol. 101, 1181-1217.

필자 소개

허민숙 Heo, Min Sook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Women's Institute) 연구교수

한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여성학 박사

논저 “Women's Movement and the Politics of Framing”, 『폭력의 얼굴들(공저)』, “여성주의 인권정치학”

이메일 mnsheo@hanmail.net